

『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
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경영을 개선하고 귀농인에게 임대료를 전액
감면해줌으로써 농촌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감면에 관한 기준 신설(안 제11조)

-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: 전액 감면

나. 농업기계 구입 및 폐기에 따른 각 항 신설(안 제17조)

다. 심의위원회 설치 용어 정비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,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1. 3. ~ 1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농업기계 구입 시 심의를 거쳐 기종을 선정하고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에게 한시적으로(2032년 12월 31일까지)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 -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의 농업인 수는 '20년 기준 대략 24,000여명 정도로 최근 코로나-19, 식습관 변화 등 농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게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감면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